

가정 상담

통권 500호

2025

04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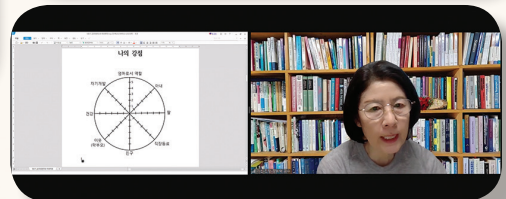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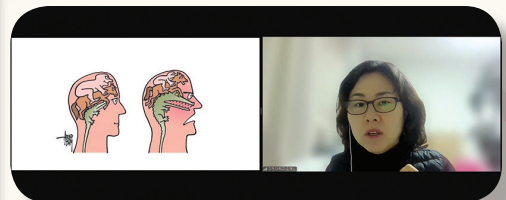




상담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열려 정기 전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인준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 36면)



지난 3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동지교실'이 열린 것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 36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한 마음으로 깨끗한 세상을
럼 : (염)원합니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① | 〈가정상담〉 500호 발간
- 11 • 특집 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15 • 특집 ③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소송구조 분석 - 파산 면책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⑧
- 26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2 • 결혼과 인생(243) 영화 이야기
라스트 마일 _ 김용언
- 34 • 좋은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 35 • 실무수습 소감문
- 36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8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박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5. 4.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설명 지금까지 발행된 〈가정상담〉을 배경으로 상단 우측부터 창간호, 통권 100호, 통권 200호, 통권 300호, 통권 400호를 전면에 놓았다.



〈가정상담〉 500호에 부쳐

법률구조의 길을 열어온 상담소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쪽박으로 한강 물을 퍼내다가 바깥으로 퍼내게 됐어.” 1985년 『쪽박으로 한강 물을』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던 이태영 선생님께서 〈가정상담〉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쪽박은 작은 바가지, 바깥으로 퍼내기를 일컬어 편하게 쓰던 당시의 말입니다. 1956년 상담소 문을 연 선생님은 당신이 평생 해오신 일을 ‘쪽박으로 한강 물을 퍼내는 일’에 비유하시곤 했는데 상상만으로도 고된 그 일을 시작하신 선생님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1956년, 한국전쟁으로 산천은 폐허가 되었고, 먹고 사는 일이 최고의 과제였던 그 시절에 이미 선생님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주와 더불어 사람됨의 문제, 인권과 평등이라는 과제를 생각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인권 보장을 통해 가정 내 민주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셨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중심에 〈가정상담〉이 있었습니다. 이태영 선생님은 일찍부터 여성 전문 은행, 여성 전문 언론사를 꿈 꾸었고 그 시작을 〈가정상담〉의 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971년에 창립 15주년을 맞아 4면으로 발행된 소박한 신문이 〈가정상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연 1회 발간을 시작으로 연 2회, 3회, 격월간을 거쳐 매월 발행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타블로이드판 4면이었다가 국배판 그리고 조금씩 지면을 늘려 16면에서 오늘날에는 40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의 발간으로 상담소는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를 널리 알리면서 그 뜻을 함께할 이들을 모으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마스크 또한 발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같은 지면 그리고 방송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예전에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것들을 현실화시켜 줍니다.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 등은 때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상담이 활성화되어 상담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이나 화상 면접 상담이 보편화되는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화 안내나 간단한 절차 등을 알려주는 유선 전화상담이 상담소 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점차 인터넷을 이용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상담소에서도 일찍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 보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의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의 형태로 지난 발행분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지면 발행과 함께 월 4만여 건이 넘는 웹진 발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 초기 상담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상담소 발전의 토대가 되었는데 〈가정상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소와 뜻을 함께 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였던 상담소의 처지를 이해하였던 당대의 여성

가자들이 〈가정상담〉의 발행을 도왔던 일들도 상담소 역사의 주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상담〉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상담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매체인 동시에 가족법 개정, 다양한 사회 교육 사업의 흐름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주요한 매체로 상담소 역사와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상담소는 창립 70주년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하여 옛날 시인은 70 인생은 매우 드문 ‘고희’라 했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사람의 나이 70은 이제 평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나날이 성장하고 때로 발전의 방향에서 그 키를 잡아 인도하며 한결같은 걸음을 하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어난 선각자의 혜안, 그 뜻을 지지하고 함께한 회원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상담소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상담소의 오늘을 만들고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창립 15년에 이르러 자원봉사의 조력으로 소박한 기관지를 발행하고 한걸음 씩 성장해 온 〈가정상담〉은 곧 상담소의 역사입니다.

인터넷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고 홈페이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누군가 그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빈집일 수밖에 없듯이 콘텐츠가 없다면 매체는 허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이 없다면 〈가정상담〉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내용과 형식을 채우고 발전하며 상담소는 앞으로도 모든 가족구성원, 모든 가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집 ①

<가정상담> 500호 발간

언제 어디서나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상담소의 소리를 전해 온 <가정상담> 1971년 처음 발간해 54년 만에 통권 500호 발간

<가정상담>이 지나온 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던 지난 1971년 기관지 <가정상담>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가정상담>은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상담소 각 부문의 사업 내용을 전하는 소식지이자 상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국내외 법률구조 사업의 현황,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파하는 상담소의 기관지로 충실한 역할을 다해왔으며, 상담소 창립 7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 통권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1971년 10월 5일 상담소 창립 15년 만에 연간 형태로 창간호 발행

1978년 8호까지 발간

1979년 연 2회 발간

1980년 연 3회 발간

1981년 문공부에 정기간행물 등록, 격월간으로 발행, 타블로이드판 4면

원곡 김기승 선생의 친필 제호 사용

편집위원회 구성 - 한국일보 장명수 기자, 동아일보 지영선 기자, 중앙일보 김정자 기자, 서울신문 조남진 기자 등 상담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간지 여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정상담> 제작 자원 봉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1년까지 모두 12명의 각 언론사 여기자들이 <가정상담>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1984년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월 5천 부씩 발행

1986년 월간으로 발행, 월간 정기간행물로 등록, 판형과 체제를 정비하여 국배판 16면으로 발행하는 한편 소식지에서 교육계몽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월 1만부 발행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여성과 유관단체에 소식과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법인 상담소의 기관지로서 성격을 살리면서 2도 인쇄를 시작하였다.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여 9월부터 월 12,000부를 발행하였다.

2000년 4월 통권 200호를 맞아 지면을 혁신하며 20면으로 증면하였다.

2006년 1월 상담소 사업의 확장과 활성화에 맞추어 24면으로 증명하였다.

2008년 8월 상담소 창립 52주년의 해, 발간 37년을 맞아 통권 300호를 발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28면, 32면 발행도 시도하였다.

2009년 1월 200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을 기념하여 정희성 시인이 자필로 써서 기증한 축시 '겨자꽃 핀 봄날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하여'에서 발췌하여 새로이 제호로 사용하면서, 표지 4면 4도 인쇄, 본문 28면 흑백인쇄로 본격 32면 발행을 시작하였다.

2010년 1월 웹진 형태의 <가정상담> 발송을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36면으로 증면발행을 시작하였다.

2014년 5월 화가인 이현혜 평생회원의 작품을 표지에 담기 시작하였다.

2016년 1월 원로 가족법학자인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친필 제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통권 400호로 12월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7년 1월 표지 4면 4도 인쇄, 본문 흑백인쇄 36면으로 40면 발행을 시작하였다.

2025년 4월 통권 500호 발간

뜻을 새기며 다시 보는 창간사

가정상담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모두 4면으로 1면에는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와 기세훈 당시 서울고등법원장 겸 사법연수원장, 이숙종 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의 축하 그리고 주요한 소식을 실었다. 2면에는 김주수 교수가 본소 상담위원의 직함으로 쓴 논단 '부부의 재산적 독립의 이상과 일상가사 대리권' 그리고 통계와 가정상담 사건에 대한 소개를 실었으며 3면에는 국내 법률구조활동 내용 및 상담소의 지나온 역사에 대한 회고를 실었다. 4면에는 상담소의 연혁과 상담소 이사진, 역대 상담간사의 명단 및 상담소의 하루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1971년 10월 5일 발간한 <가정상담> 창간호에 실린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당시 국한혼용 및 맞춤법을 그대로 살려 썼다.

創刊辭

世界 平和의 문턱에서

李 兌 榮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극히 소박한 소망으로 가정법률 상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의 소망은 결코 그 누구의 관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속에서 韓國女性の 끈질긴 삶의 태도를 지켜 相談所를 꾸려온 결과, 이젠 제법 살림다운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웃 사람들의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법이 가진 者에겐 自己保護의 방패가 되고, 없는 者에겐 두들겨 맞는 철퇴가 되는 모순을 알게 된 저는 特히 가난하고 無知한 우리네 女性에게 法の 惠澤을 일러 주고자 法の 生活化, 法の 庶民化 運動을 제창했습니다.

이러한 運動이 결국 反共運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世界平和運動까지 된다는 사실은 얼마 전 철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유고슬라비아」에서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受賞對象이 「자연인 李兌榮」이 아니라 「韓國家庭法律相談所」임을 알았을 때, 나는 지난 15년간 상담소를 도와주신 많은 親知에게 이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까 걱정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相談所는 이 나라 모든 女性들의 相談所였건만, 그동안 살림에 쪼들려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엄두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창간한 「가정상담」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한 편, 일손이 바빠 相談所를 찾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相談役이 될 것입니다.

15년 만에 겨우 이렇듯 초라한 相談紙를 내놓았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이젠 빠른 속도로 성장하리라 믿어집니다.

머지않아 매일 매일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相談紙가 되도록 힘써 노력할 생각입니다.

15년 전 단칸방에 차린 相談所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알찬 살림을 차린 것처럼, 이 傳單같은 「가정상담」이 또 다시 여러분의 성원으로 세계적인 家庭法律紙가 될 부푼 소망으로 創刊號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國內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된 우리는 보다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충고와 협력이 「가정상담」을 통해 倍加되고, 여러분의 걱정들이 「가정상담」을 통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本所所長)

축하의 말씀

〈가정상담〉 500호 발간 축하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월간 〈가정상담〉의 통권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1956년 설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법률구조기관으로, 법률구조 사업은 물론이고,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제·개정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러한 역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상담〉이 500호 발간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500호 발간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역할을 다해오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71년 10월 창간한 〈가정상담〉은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상담소 각 부문의 사업 내용을 전하는 소식지이자 상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 국내외 법률구조 사업의 현황, 가족법 개정 운동을 전파하는 상담소의 기관지로 충실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가정상담〉은 실제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들을 통계화하여 소개해주고, 특별기고와 특별기획을 통해 가족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등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또한 〈가정상담〉의 가족법 개정 운동 60년사와 같은 기획연재를 통해서서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치열한 노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증가하며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관련된 법률 분쟁도 기존의 모습과는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상담〉이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의 권익은 안정적으로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 5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가정상담〉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마른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는 봄비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법률 지식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정상담>이 되길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족 구성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가정상담>과 이태영 선생님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 전 한국일보 사장



1971년 10월 5일에 나온 ‘가정상담’ 창간호에서 85년 12월 20일에 나온 28호까지 한 권으로 묶은 초기의 신문철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빌려다가 며칠 동안 읽었다. 창립 15주년에 창간호를 발간했으니 15주년에서 29주년에 이르는 창기의 역동적인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가정법률상담소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고, ‘가정상담’을 만드는 자원봉사도 했기 때문에 낯익은 내용이 많았지만, 새삼 이태영 선생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 많았다. 막사이사이 상, 법을 통한 세계 평화상, 세계 감리교 평화상 등 세계적인 상을 받으셨을 때의 인터뷰 기사, 선생님이 쓰신 글, 상상을 초월하는 씬샷은 아이디어로 계속 추진해 가신 각종 사업들 … ‘가정상담’에는 한 경이로운 여성의 존재감이 가득 차 있었다.

1952년 한국 여성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이태영이라는 여성이 없었다면 한국 여성사는 몇 년을 뒤쳐졌을까. 이 나라 여자들은 얼마나 더 법의 차별로 짓밟히고

눈물 흘려야 했을까.

“가진 자에게는 법이 자기 보호의 방패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두들겨 맞는 철퇴가 되는 모순 … 가난하고 무지하고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의 보호와 혜택을 알려주기 위해 법의 서민화, 생활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71년 유고슬라비아의 벨그라드에서 열린 ‘법을 통한 세계 회의’에서 가정법률상담소장의 자격으로 ‘법을 통한 세계 평화상’을 받은 이태영 선생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141개의 회원국을 가진 이 세계 최대의 법조인기구는 한국의 놀라운 법률부조 사업에 상을 주면서 “모든 국가는 피란민 무국적자 이민자 등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길고도 험난했던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역사도 ‘가정상담’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일제시대의 법을 받아들였던 우리 가족법은 1960년 일부 개정되었으나 호주제, 재산 상속제, 친권제, 동성동본 금혼제 등 곳곳에서 남성 위주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1973년, 77년, 84년 대대적인 가족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는 항상 이태영 선생님과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갖게 된 가족법은 이태영 선생님의 땀과 눈물과 투쟁으로 얼룩진 선물이다.

선생님은 상담소 운영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선생님은 여성들의 모금으로 여의도에 여성 100인 회관을 신축하여 상담소 사옥을 마련했고, 100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가난한 내담자들의 재판을 도왔고, 미국, 캐나다 일본에 20여 개 지소를 열어 교포들의 법률 상담을 받았다. 어머니 학교, 노인 학교 등을 열어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결혼식을 못한 채 동거하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무료결혼식을 주선하는 혼인 부조 사업도 시작했다.

75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상 위원회는 이태영 선생님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여성을 억압한 이 시대가 낳은 인물이며, 이 시대를 창조한 인물이다”

‘가정상담’을 읽으면서 기록의 중요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가정상담’은 한국 법률구조 사업의 역사가 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전 세계의 차별받는 사람들

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교과서가 되고, 세계 평화운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정상담’이 1000호, 2000호로 계속 발전하기를 빕니다.

축하의 말씀



〈가정상담〉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71년 10월 5일에 창간호가 발행된 〈가정상담〉이 어느덧 통권 500호를 간행하게 되었으니, 오랜 기간 〈가정상담〉을 곁에 두고 읽어온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법 분야의 중요한 개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기관지로서 가족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동안 발간, 축적된 〈가정상담〉은 그 자체로서 한국 가족법의 역사를 기록한 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족법 분야의 쟁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는데, 그 결과물은 늘 〈가정상담〉에 게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학회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상담〉은 이러한 논의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함으로써 가족법 분야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상담〉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법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상담〉에는 다양한 상담사례들이 소개되는데,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담사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가정상담〉은 가정법률상담 자

료집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인터넷의 세상에서도 〈가정상담〉에 실린 여러 상담사례들과 그에 관한 통계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가족법에서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 사회에는 ‘법은 가정의 담을 넘지 않는다’는 관념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남편의 간통은 처벌되지 않고, 이혼사유도 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러한 관념은 그대로 온존되어, 법이 왜 가정사에 개입하느냐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시 가정 내의 약자였던 여성과 아동이 희생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나,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상담〉은 ‘법은 가정의 담을 넘지 않는다’는 그릇된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를 허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관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상담〉의 창간호가 발행된 197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이 가진 자에겐 자기보호의 방패가 되고, 없는 자에겐 두들겨 맞는 철퇴가 되는 모순”(1971년 10월 5일에 발간된 〈가정상담〉 창간호에 실린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 중 한 구절)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상담〉은 그동안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길에 함께 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특집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2011년부터 시작, 법원 방문 민원인에게 사건 관련 진행 절차 및 법규정 등 실질적 상담 제공

2011년 서울가정법원 출장 상담 시작
2024년 5,795건 상담
현재까지 총 97,440건 상담, 월평균 591건

유언·상속, 이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상담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고
여성은 50대, 60대, 40대, 남성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

법원 방문 민원인에게 사건 관련 진행 절차 및 법규정 등
실질적 상담 제공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서류 작성도 도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법률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했다.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본 상담소의 출장상담실을 신설하게 되었다.

총 2개의 상담실에서 본 상담소 상담위원과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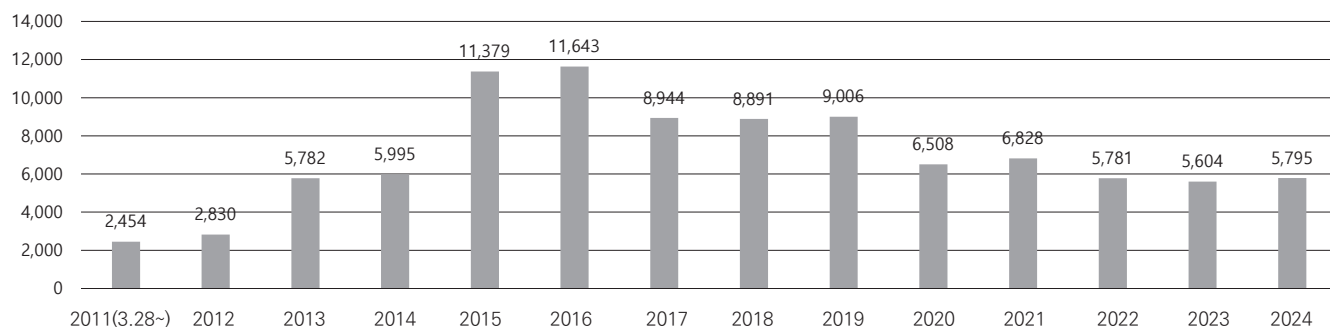
1. 연도별 상담건수

2011년 3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총 97,44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첫 해인 2011년에는 상담건수가 2,45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830건, 2013년에는 5,782건, 2014년에는 5,99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민원인들의 상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2015년에는 상담실 1개를 추가로 오픈하여 상담실이 2개에 이르렀다. 이에 상담건수는 2015년 11,379건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2016년 11,643건, 2017년 8,944건, 2018년 8,891건, 2019년 9,006건, 2020년 6,508건, 2021년 6,828건, 2022년 5,781건, 2023년 5,604건, 2024년 5,795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연간 5천 건 이상, 월평균 591건의 법률상담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연도별 건수



〈 연도별 상담건수 분석표 〉

연도	총건수	월평균
2011(3.28~)	2,454	273
2012	2,830	236
2013	5,782	482
2014	5,995	500
2015	11,379	948
2016	11,643	970
2017	8,944	745
2018	8,891	741
2019	9,006	751
2020	6,508	542
2021	6,828	569
2022	5,781	482
2023	5,604	467
2024	5,795	483
합계	97,440	591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는 184건(3.2%)이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의 대서요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상담소의 법률구조를 안내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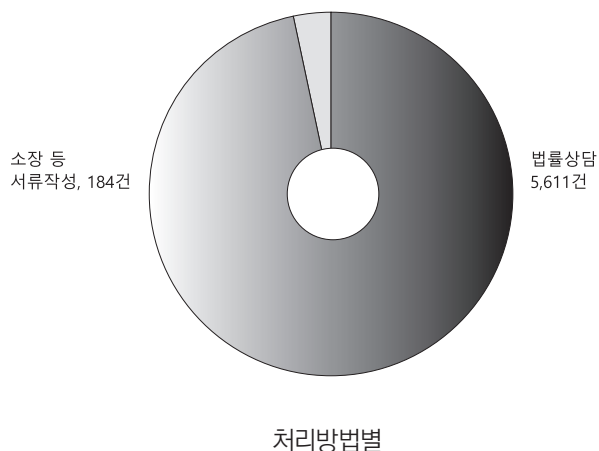
〈 처리방법별 분석표 〉

처리방법	총건수	%
법률상담	5,611	96.8
소장 등 서류작성	184	3.2
합계	5,795	100

2. 사건처리별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장, 신청서, 답변서, 보정서 등 다양한 서류 작성 도와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상담을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5,795건 중 법률상담을 한 경우는 5,611건(96.8%)이었고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민원인들에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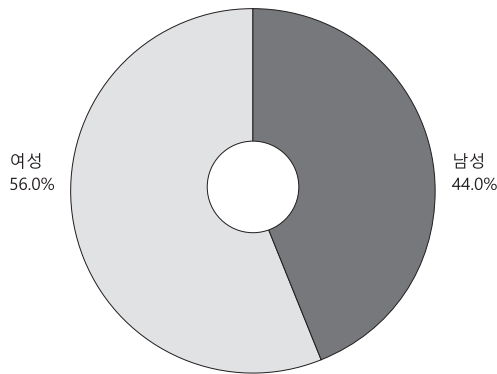
3.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아

여 성	3,244 명	56.0%
남 성	2,551 명	44.0%
합 계	5,795 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3,244명(56.0%), 남성이 2,551명(44.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2) 연령별

여성은 50대, 60대, 40대

남성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50대가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2.0%), 40대(21.5%), 70대(12.2%), 30대(11.7%), 80대 이상(3.7%), 20대(3.4%), 10대(0.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3.1%), 40대(19.5%), 70대(15.5%), 30대(8.3%), 80대 이상(5.0%), 20대(2.9%), 10대(0.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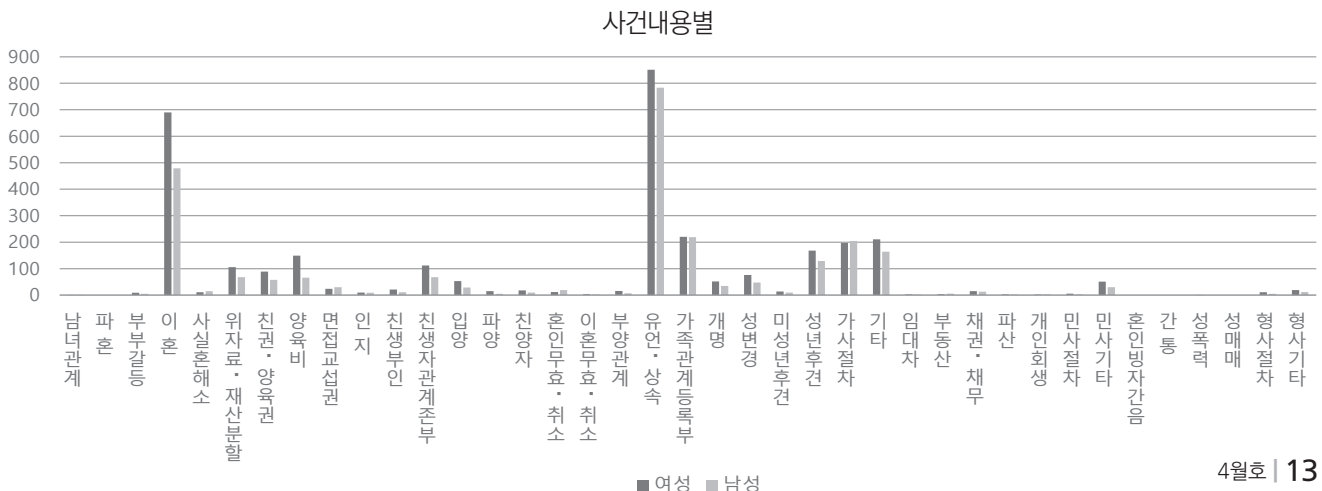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여 성		남 성		합 계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10대	16	0.5	13	0.5	29	0.5
20대	109	3.4	73	2.9	182	3.1
30대	379	11.7	212	8.3	591	10.2
40대	699	21.5	498	19.5	1197	20.7
50대	789	24.3	590	23.1	1379	23.8
60대	714	22.0	632	24.8	1346	23.2
70대	396	12.2	395	15.5	791	13.6
80대 이상	121	3.7	127	5.0	248	4.3
미 상	21	0.6	11	0.4	32	0.6
합 계	3,244	100	2,551	100	5,795	100

4. 사건내용별

유언·상속, 이혼, 가족관계등록부, 가사절차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유언·상속으로 총 5,795건 중 1,634건(28.2%)에 달했다. 다음은 이혼(1,169건, 20.2%), 가족관계등록부(439건, 7.6%), 가사절차(402건, 6.9%), 가사기타(375건, 6.5%), 성년후견(297건, 5.1%), 양육비(215건, 3.7%), 친생자관계존부(180건,



3.1%), 위자료·재산분할(174건, 3.0%), 친권·양육권(147건, 2.5%), 성변경(124건, 2.1%), 개명(87건, 1.5%), 입양(82건, 1.4%), 민사기타(81건, 1.4%) 순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3,244건 중 유언·상속이 851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690건, 21.3%), 가족관계등록부(220건, 6.8%), 가사기타(211건, 6.5%), 가사절차(197건, 6.1%), 성년후견(168건, 5.2%), 양육비(149건, 4.6%), 친생자관계존부(112건, 3.5%), 위자료·재산분할(106건, 3.3%), 친권·양육권(89건, 2.7%), 성

변경(76건, 2.3%), 입양(53건, 1.6%), 개명(52건, 1.6%), 민사기타(51건, 1.6%) 순이었다.

남성은 총 2,551건 중 유언·상속이 783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479건, 18.8%), 가족관계등록부(219건, 8.6%), 가사절차(205건, 8.0%), 가사기타(164건, 6.4%), 성년후견(129건, 5.1%), 위자료·재산분할/친생자관계존부(각 68건, 각 2.7%), 양육비(66건, 2.6%), 친권·양육권(58건, 2.3%), 성변경(48건, 1.9%), 개명(35건, 1.4%), 면접교섭권/민사기타(각 30건, 각 1.2%) 순이었다.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 건 내 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5,604건 (96.7%)	남녀관계			1	0.0	1	0.0	2	0.0
	파 혼			-	-	-	-	-	-
	부부갈등			9	0.3	5	0.2	14	0.2
	이 혼			690	21.3	479	18.8	1,169	20.2
	사실혼해소			11	0.3	15	0.6	26	0.4
	위자료·재산분할			106	3.3	68	2.7	174	3.0
	친권·양육권			89	2.7	58	2.3	147	2.5
	양육비			149	4.6	66	2.6	215	3.7
	면접교섭권			24	0.7	30	1.2	54	0.9
	인 지			10	0.3	9	0.4	19	0.3
	친생부인			21	0.6	11	0.4	32	0.6
	친생자관계존부			112	3.5	68	2.7	180	3.1
	입양			53	1.6	29	1.1	82	1.4
	파양			15	0.5	5	0.2	20	0.3
	친양자			18	0.6	10	0.4	28	0.5
	혼인무효·취소			12	0.4	19	0.7	31	0.5
	이혼무효·취소			4	0.1	2	0.1	6	0.1
	부양관계			16	0.5	7	0.3	23	0.4
	유언·상속			851	26.2	783	30.7	1,634	28.2
	가족관계등록부			220	6.8	219	8.6	439	7.6
	개명			52	1.6	35	1.4	87	1.5
	성변경			76	2.3	48	1.9	124	2.1
	미성년후견			14	0.4	10	0.4	24	0.4
	성년후견			168	5.2	129	5.1	297	5.1
	가사절차			197	6.1	205	8.0	402	6.9
	기타			211	6.5	164	6.4	375	6.5
민 사 143건 (2.5%)	임대차			3	0.1	2	0.1	5	0.1
	부동산			4	0.1	6	0.2	10	0.2
	채권·채무			15	0.5	13	0.5	28	0.5
	파산			3	0.1	2	0.1	5	0.1
	개인회생			2	0.1	3	0.1	5	0.1
	민사절차			6	0.2	3	0.1	9	0.2
	민사기타			51	1.6	30	1.2	81	1.4
형 사 48건 (0.8%)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력			1	0.0	-	-	1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1	0.3	5	0.2	16	0.3
	형사기타			19	0.6	12	0.5	31	0.5
합 계				3,244	100	2,551	100	5,795	100



특집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소송구조 분석 | 개인파산 및 면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경로로 상담소 찾는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인권회복 도와

- 신청인 중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이 82.8% 차지해
- 신청인 중 82%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 대다수가 법정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소득 또는 급여 감소, 입원, 실직 등의 순
-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 승소율 98.1%에 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소의 신용회복 관련 소송구조는 본소를 방문한 내담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으로부터 연계된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변제하기 어려운 과중한 채무는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으로 인해 임금계좌나 급여가 압류될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해고되거나 고용주와의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신용불량상태에서는 더욱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가정해체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소의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소송구조는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로 조속히 복귀하고 인권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 후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다.

파산결정 후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①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②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③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④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의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으로 소멸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권(復權)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 남게 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년 동안 소득의 일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6건의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를 하였으며, 이중 본소에서 128건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0%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협력기관에서 8건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128건의 본소 진행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¹⁾ 이 중 파산 및 면책사건이 121건, 개인회생사건이 7건이었다.²⁾ 이하에서는 상담 내용과 신청서, 법원 결정문 등을 토대로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 상황, 채무 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경위, 그리고 사건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1.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

-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더 많아
- 60대, 50대, 40대 순으로,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이 82.8% 차지해

(1) 성별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85명(66%), 여성이 43명(3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표-1 신청인의 성별〉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빈도(명)	43	85	128
비율(%)	34	66	100.0

(2) 연령

신청인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48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 40명(31.3%), 40대 18명(14.1%), 70대 14명(10.9%), 80대 이상 4명(3.1%), 30대 4명(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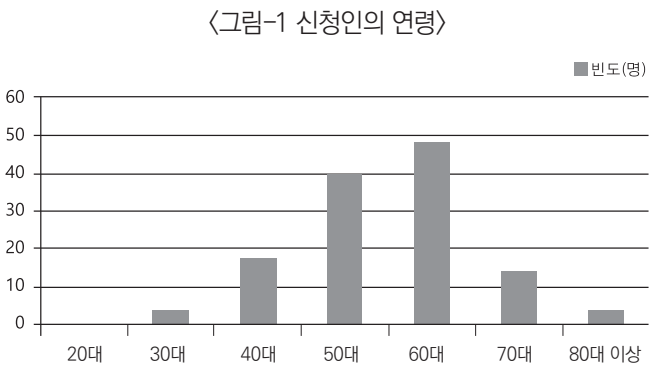
1) 〈연도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파산·면책 등 소송구조 본소 건수〉

연도	2014	2016	2017	2020	2021	2022	2023	2024
빈도(건)	97	149	154	152	125	138	116	128

2) 〈2024년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분류〉

구분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합계
빈도(명)	121	7	128
비율(%)	94.5	5.5	100.0

의 순이었다. 신청인 10명 중 8명 이상(82.8%)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생애 주기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시기에 빚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50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50대 이상 87%, 101명).³⁾ 따라서 본소의 파산 및 면책 사건 법률구조 사업은 노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 및 사회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표-2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0	0.0
30대	4	3.1
40대	18	14.1
50대	40	31.3
60대	48	37.5
70대	14	10.9
80대 이상	4	3.1
합계	128	100.0

(3) 학력

신청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5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19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17명 순이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가 23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청인이 81명(63.3%)에 달했다.

〈표-3 신청인의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무학	0	0.0
초중퇴	3	2.3
초졸	14	10.9
중중퇴	5	3.9
중졸	19	14.8
고중퇴	6	4.7
고졸	55	43.0
대중퇴	3	2.3
전문대졸	6	4.7
대졸이상	17	13.3
합계	128	100.0

2. 신청인의 생활상황 분석

- 신청인의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나 단순노무, 공공근로
- 신청인 대다수가 법정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상황

3) 〈2023년 본소 파산면책 등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1	0.9
30대	3	2.6
40대	11	9.5
50대	24	20.7
60대	61	52.6
70대	12	10.3
80대 이상	4	3.4
합계	116	100.0

(1) 직업

신청인 대부분은 신청 당시 무직(103명, 8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중 일용직과 단순노무,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14.1% 였다. 소송구조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채무로 인해 적절한 일터를 찾기 어려웠고, 신청인이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이 있더라도 채무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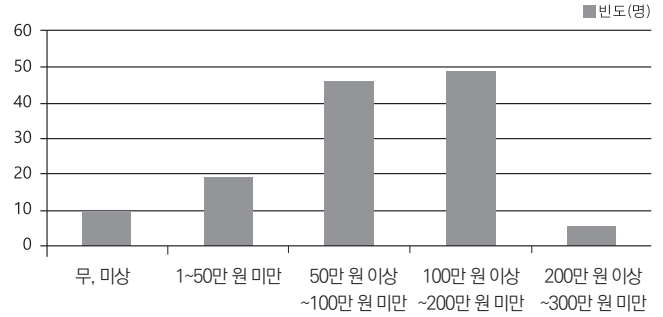
〈표-4 신청인의 직업〉

직업	빈도(명)	비율(%)
회사원	2	1.6
공공근로	7	5.5
일용직	6	4.7
단순노무	5	3.9
무직	103	80.3
자영업	1	0.8
교육직	1	0.8
세일즈	1	0.8
기술직	1	0.8
기타	1	0.8
합계	128	100.0

(2) 월수입

신청인의 월수입을 보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이 49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46명(35.9%)이었다. 소득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8(21.8%)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경우가 74명(57.7%)에 달하여, 신청인 대부분이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명(3.9%)이 있었다.⁴⁾

〈그림-2 신청인의 월수입〉



〈표-5 신청인의 월수입〉

월수입	빈도(명)	비율(%)
무, 미상	9	7.0
1~50만 원 미만	19	14.8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46	35.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9	38.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	3.9
합계	128	100.0

(3) 주거형태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신청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89명, 69.5%)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고시원이나 쪽방(18명, 14.1%)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10명, 7.8%)하는 경우나,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7명, 5.5%)하는 경우와 쉼터(4명, 3.1%)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표-6 신청인의 주거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89	69.5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10	7.8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7	5.5
쉼터 거주	4	3.1
쪽방 거주	18	14.1
합계	128	100.0

- 4) ① 여성(40대, 대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129,407,310원, 채무증대경위: 미성년자녀 2명 포함 총 3인 가구의 생활비가 부족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이라 파산면책 신청을 함.
 ② 남성(40대, 대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59,260,393원, 채무증대경위: 미성년자녀 2명 포함 총 3인 가구의 생활비가 부족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이라 파산면책 신청을 함.
 ③ 여성(50대, 대졸), 회사원,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 채무액: 593,653,542원, 채무증대경위: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근로활동 중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함.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쪽방 포함)에 거주하는 107명의 신청인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보면, 임차보증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42명(39.3%),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36명(33.6%) 등으로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쪽방 포함) 임차보증금〉

임대주택 보증금	빈도(명)	비율(%)
없음	23	21.5
100만 원 미만	13	12.1
100만 이상 ~ 300만 원 미만	14	13.1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1	10.3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7	15.9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13	12.1
2,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0	9.4
5,000만 원 이상	6	5.6
합계	107	100.0

(4) 신청인의 과거 경력

신청인의 과거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을 보면, 자영업자가 4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용직 24명(18.7%),

〈표-8 신청인의 과거 경력〉

직업	빈도(명)	비율(%)
주부	3	2.3
회사원	16	12.5
공공근로	1	0.8
일용직	24	18.7
단순노무	22	17.2
자영업	40	31.2
경찰	1	0.8
교육직	1	0.8
운전	8	6.3
세일즈	3	2.3
종교인	1	0.8
기술직	1	0.8
무직	7	5.5
합계	128	100.0

단순노무직 22명(17.2%)으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신용불량은 특정 직업이나 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3.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분석

- 신청인 128명의 총 채무액은 203억 원,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660만 원, 최고 채무액은 19억 원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 피해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소득 또는 급여 감소, 입원, 실직 등의 순

가. 채무액 분석

(1) 신청인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38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7명(28.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2명(17.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5명(11.7%), 순이었다. 또한 채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4명(3.1%)이 있었다.⁵⁾ 그리고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

5) ① 남성(70대, 초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100~200만 원 미만, 채무액: 7,685,161원, 채무증대경위: 배우자 포함 2인 가구의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오랫동안 저소득에 시달려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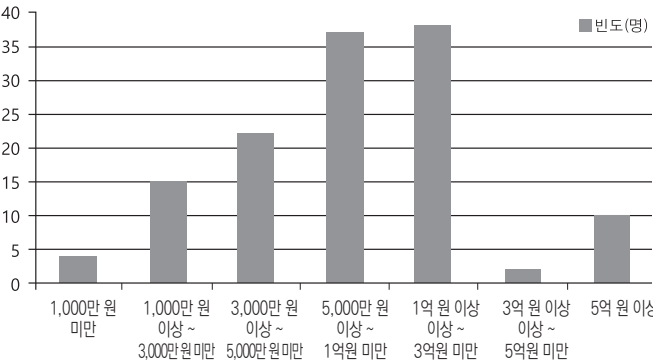
② 여성(40대, 고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100~200만 원 미만, 채무액: 6,689,382원, 채무증대경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으나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않아 소득이 없던 신청인이 오롯이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함.

③ 남성(60대, 초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1~50만 원 미만, 채무액: 6,757,128원, 채무증대경위: 어깨수술을 받은 후로 소득활동이 끊겨 신용불량자가 됨. 또한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대되었고, 수급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이라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함.

④ 남성(60대, 고졸),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급비 50~100만 원 미만, 채무액: 8,551,211원, 채무증대경위: 과거 돈을 빌려 당구장을 운영했지만 장기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함. 이후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파산면책 신청을 함.

우도 10명(7.8%)이나 있었다. 이처럼 채무액의 다소와 상관 없이 신청인의 건강상태, 현재 상황, 채무 상환 가능성,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3 신청인의 채무액〉



〈표-9 신청인의 채무액〉

채무액	빈도(명)	비율(%)
1,000만 원 미만	4	3.1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15	11.7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22	17.2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7	28.9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8	29.7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	1.6
5억 원 이상	10	7.8
합계	128	100.0

(2)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인 10명의 신청인 연령을 보면 60대 4명(40.0%), 50대 3명(30.0%), 70대 2명(20.0%), 40대 1명(10.0%)이었으며,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 채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사례

사례 1. (남성, 50대)

신청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열심히 영업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영구적으로 지체장애를 앓게 되었다. 치료기간 동안 대리점의 경영 및 재정상태는 악화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신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자금은 장애를 야기했던 사고의 보상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에는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속된 적자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했으나 여전히 다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현재 총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으로는 변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사례 2. (여성, 50대)

신청인은 사업을 하던 배우자의 요청으로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공매로 매각되는 일을 겪었다. 당시 배우자가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말해 신청인은 안심했으나, 2023년경 채무조정을 하면서 해당 대출금이 아직도 채무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로 시동생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유통 및 통신 판매업을 했으나, 사업 실패로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 신청인은 빚을 갚아주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으며 지난 5년간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까지 저지르며 채무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와 자동차세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황이었다. 현재 1인 가구로 있으며 강사로 재직하여 월평균 2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 128명의 총 채무액은 20,328,413,757원에 달하였다. 최저 채무액은 6,689,382원이었고, 최고 채무액은 1,949,303,497원이었다.⁶⁾

6) 신청인(남성, 40대, 대중퇴, 월수입 50~100만 원 미만)은 웹드라마와 웹예능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사업운영자금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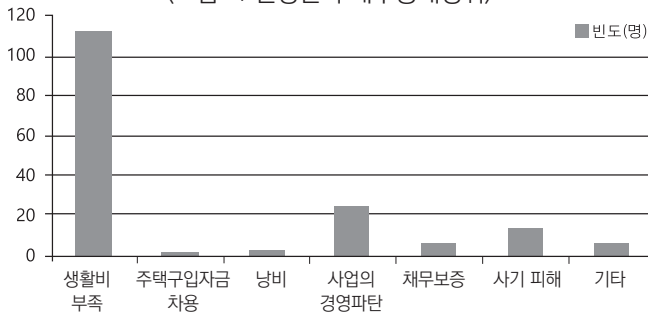
〈표-10 평균 채무액 및 평균 채권자 수〉

채무 총액	20,328,413,757원
최고 채무액	1,949,303,497원
최저 채무액	6,689,382원
최다 채권자 수	22명
1인당 평균 채무액	158,815,732원
평균 채권자 수	6.3명

나. 채무증대경위 분석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이유인 채무 증대경위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채무는 다양한 사유로 증대될 수 있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림-4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표-11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채무증대경위	빈도(명)	비율(%)
생활비부족	112	68.3
주택구입자금 차용	1	0.6
낭비	2	1.2
사업의 경영파탄	24	14.6
채무보증	6	3.7
사기 피해	13	7.9
기타	6	3.7
합계	164	100.0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이 필요해 신청인이 대표 이사로서 보증을 섰다. 하지만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월 88만 원씩 받는 수급비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고, 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해 7월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의 총채무액은 19억 원에 달했다.

(1) 생활비 부족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112명, 68.3%). 상담내용에서 채무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 즉 소위 카드돌려막기로 인해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2) 사업의 경영파탄

두 번째로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사업의 경영파탄으로 인한 경우였다(24명, 14.6%).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되는 채무의 경우 통상 그 채무액이 큰 경우가 많아 신청인들이 변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3) 사기피해

세 번째 사유는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13명, 7.9%). 사기 피해의 경우, 신청인들이 주변의 권유나 기망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된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몇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고 빚을 지게 된 경우처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주고 신청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된 피해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행위로써 타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포차, 대포폰 등을 구입하여 범죄 등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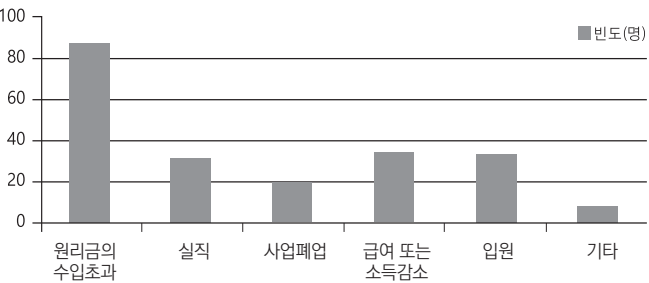
(4) 채무보증

네 번째 사유는 타인의 채무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면서, 신청인의 채무가 증대한 경우로 3.7%(6명)에 달하였다.

다. 지급불능경위 분석

지급불능경위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이다.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불능경위 또한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며,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림-5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표-12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87	41.0
실직	31	14.6
사업폐업	19	9.0
급여 또는 소득감소	34	16.0
입원	33	15.6
기타	8	3.8
합계	212	100.0

(1) 원리금의 수입초과

신청인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87명, 41.0%)로 작년⁷⁾보다 4.2p% 높았다. 원금의 상환과 늘어나는 이자를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채무자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1금융권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율의 이자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금리로 바뀌주겠다는 대환대출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피해로 원리금이 증대함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2) 급여 또는 소득감소

지급불능경위 중 두 번째는 급여 또는 소득감소(34명, 16.0%)였다. 어려운 경기로 인해 자영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직장인은 이직의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3) 입원

지급불능경위 중 세 번째는 입원(33명, 15.6%)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채무와 가족 간 불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7) 〈2023년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63	36.8
실직	28	16.4
사업폐업	21	12.3
급여 또는 소득감소	19	11.1
입원	33	19.3
기타	7	4.1
합계	171	100.0

한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이나 부상 및 신체적 발병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4) 실직

지급불능경위 중 네 번째는 실직(31명, 14.6%)이었다. 경제난으로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짐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5) 사업폐업

지급불능경위 중 다섯 번째는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19명, 9.0%)였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 사건결과 분석

본소가 2024년도 진행한 사건(128건) 중 103건(80.4%)이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19.6%)이다. 103건 중 101건이 인용되어 승소율이 98.1%에 이르렀다. 신청인이 원하여 취하한 2건을 제외하면 본소가 진행한 신청사건 모두 인용된 셈이다.

〈표-13 사건결과〉

	빈도(건)	비율(%)	승소율 98.1**		
종결	103	80.4	종결사건 103(건)		
진행중	25	19.6	승소	기각	취하
계	128	100.0	101	0	2

** 승소율 : (승소)/(승소+취하+기각)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소에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한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과 사업의 경영파탄을 이유로 채무를 지기 시작한다. 또한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 사기 피해, 실직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청인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경제적 안정이 절실한 계층에서의 파산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전환된다. 또한 128명의 신청인 중 105명(82%)이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법정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신청인 중 80.3%가 현재 무직인 점과 신청인 중 77.4%가 임대주택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의 본인 혹은 타인 명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피치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하는데 꼭 필요한 신용회복제도이다. 한편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비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갱생과 가정의 회복 및 사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규선 상담위원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4)

2. 보수세력과의 대립-국회 공청회(2)

법사위는 공청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민법초안 공청회 진행 규칙’을 발표하고 친족상속편 17개 항목을 포함한 28개 항목의 공청 사항을 자세히 제시하는 한편 법조계·학계·유림·여성단체는 물론 일반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 공청회에 참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친족상속편 공청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친족상속편(오전부)

- ① 분가제도의 인정에 대하여
- ② 호주제도와 호주권의 내용에 관하여(동 제6항)
- ③ 가재단, 가택 등의 가산제도의 채부에 관하여
- ④ 약혼 및 혼인연령에 관하여(동 제11항)
- ⑤ 성년자의 혼인, 협의이혼의 자유에 관하여(동 제10항·제20항)
- ⑥ 동성동본자간의 혼인금지규정의 부설치에 관하여(제22항)
- ⑦ 형식혼주의의 채택에 관하여(동 제12항)
- ⑧ 처의 특유재산과 이에 대한 부의 관리·사용 수익권 불인정에 관하여(동 제14항·제16항)

- ⑨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에 관하여(제18항)
- ⑩ 재판상의 이혼원인에 관하여(동 제22항)
- ⑪ 양자제도의 개혁, 특히 양자제도와 병행하여 이성양자·서양자제도의 채택에 관하여(동 제26항)
- ⑫ 친권자에 관하여(동 제21항)
- ⑬ 부양제도에 관하여(동 제33항)
- ⑭ 친족회에 관하여(동 제34항)
- ⑮ 호주상속의 순위와 여자의 지위에 관하여
- ⑯ 재산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관하여(동 제3항·제5항)
- ⑰ 대습상속제도와 특히 처의 대습상속권 부여에 관하여(동 제4항)

그러나 당초 1956년 11월 18일로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1957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최되었다. 1957년 4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일반 법조계는 물론 여성들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박세경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첫날 재산편을, 둘째날 친족상속편을 다루었는데, 친족상속편은 민법심의소위원회 장경근 위원장의 ‘친족상속편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의 입법방침과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장경근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입장 설명을 통해 “신분법은 우리나라의 고래의 전통이라든지 습속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각각 특유한 신분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 신분법에서는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생활과 유리된 법률을 만들 수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법안심의 소위원회의 법안이 전통관습 존중론에 입각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장경근 위원장은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혼인문제’에서 “남녀평등을 완전히 하자면 결국 가족제도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소간 점진적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논리를 폈고, 둘째 ‘동성동본 혼인문제’는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동성간의 결혼이 많이 있었다”며,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동성간 혼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셋째 ‘양자제도’는 서양자·보통양자 둘 다 인정할 것, 넷째 ‘상속문제’는 유처에 대해 직계비속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할 것, 다섯째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구별할 것, 여섯째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출가한 딸의 경우 그 남편이 생계의 부담을 지므로 상속분의 차별을 둘 것 등이었다.

이에 유림계의 대표로 나온 김종렬은 성년자의 혼인자유부당론과 동성동본 혼인 반대 등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법률상 성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자기 자유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으로 생각하고, 또는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좋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지금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라고 발언해 당시 여성계와는 판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광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을 지금 제정하는 목적은 평시에 있어서의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수정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 국민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친족상속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보다도 새로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즉 종래의 친족상속법 중에는 우리 헌법에 저촉되는 규

정이 적지 않으므로 이것을 다 제거하고 가정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바, “우리나라의 헌법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제5조”에 기록된 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각인의 자유평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헌법정신” 그리고 “제8조에 선언하고 있는 양성간의 차별, 신분에 의한 차별에 대한 헌법정신” 또한 제20조에 선언한 “부부동권 정신……부부의 혼인의 순결에 대한 특별보호 정신에 입각한” 친족상속법 제정을 헌법이 요청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므로 친족상속법이 관습 존중론으로 나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친족상속법의 준칙은 “헌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입각하여 제정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도 염두에 두고 입법하여야” 하므로, 세계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각항을 “친족상속법의 입법준칙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안다”고 촉구한 후, 관습 존중론에 급급한 정부 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이태영 등과 민법 개정운동에 뜻을 함께해 온 여성문제연구원의 장화순 총무실장은 ‘사후양자 폐지론’, ‘이성양자·복수양자·양녀의 인정 필요론’에 대하여 여성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후양자 폐지론’에서 장화순은 “우리나라의 종래 양자제도는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였다”고 전제하고 “그럼으로 해서 아들 없이 딸만 두고 호주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때에는 아무리 그 가정에 훌륭하고 똑똑한 딸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던 먼 친척간의 조카 아들 이러한 사람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서 그 가정의 호주상속을 하고 재산상속을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을 불합리하게 하고 친족 간의 분쟁과 경쟁이 일어나서 사회에 비극을 맞는 일”이 허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남녀의 불평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고” 딸도 호주상속을 할 수 있게 문을 개방해야 하며 서양자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의 양자는 부모를 위한 양자로부터 자녀를 위한 양자이기 때문에 동성동본을 논한다거나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이성양자·복수양자·양녀 인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편집부

육아 환경 변화와 상담 과정에서 배운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 그리고 부부가 각자 원가족 문제를 짚어보며 스스로 문제 통찰하기도

2021버2*** 폭행/ 2021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1회 등 총 14회

상담기간

2021. 12. 23. ~ 2022. 9. 14.

상담기간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경과 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2세)가 있다. 아내는 주부이고, 남편은 임대업 관리, 도어락 기술자, 배달 라이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아내 출산 후 인근에 사는 시모가 매일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었다. 아내는 시모가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하였으나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힘들던 중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4월 사건당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안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쓰러진 아내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아 오른쪽 손목과 왼쪽 손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팔 부

위를 치아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남편의 생업 때문에 집단상담이나 교육강좌 등에 참여하기 어려워 부부상담을 월 2회 진행하였으며 상담초기에 상담에 임하지 않은 3개월에 대한 기간 연장을 받아 이후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자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시모와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부부의 바람인 아파트 구입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사 분담도 적극적으로 하며 지냈다.

부부는 비폭력대화 실천과 분노조절 노력, 가사 협조 등으로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부부는 각 원가족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게 되었다. 아내는 사건당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3점, 종결상담시는 7~8점으로 평가하고, 좋아진 점으로 폭력이 없어진 점을 꼽았고, 보완점으로는 남편이 대화를 회피하지 말기 바랐다. 남편은 사건당시 아내와의 관계만족도는 0점, 종결시는 8점으로 평가하고, 좋아진 점으로 아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관념과 육아 책임감이 생겼으며 우울감이 준 점을 꼽았으며, 향후 보완점으로는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기 바랐다. 부부는 상대방의 바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로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상해 / 2021버2*** 재물손괴(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남편) 전화상담 1회
등 총 9회

상담기간

2022. 1. 14. ~ 2022. 8. 17.

상담기간

행위자는 피해자와 사실혼으로 지낸 지 8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21년 5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고, 2021년 6월 사건당일에는 자신의 전혼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피해자가 빼돌린 것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 소유 차량 옆치를 집어 방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갈등원인으로 피해자의 음주문제와 경제문제를 꼽았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음주하고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는 것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 주기 바랐다.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매일 딸 집에 가서 출산한 딸과 손주를 돌봄으로써 초래하는 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어도 1주일에 2~3회는 피해자 귀가 전 집에 돌아와 피해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정하고 노력하였다.

중간점검시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더 바라는 바는 없고 지금 상태만 유지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행위자가 바라는대로 절주노력을 하고 있

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간점검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가 또 음주하고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 간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와 마주 대하는 것이 싫어서 각방을 쓰게 되었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사실혼 해소에 대한 법적 문제와 절차를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행위자는 이를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실시),
음주문제상담 6회(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3회(화상으로 실시)

등 총 16회

상담기간

2022. 3. 22. ~ 2022. 9. 20.

상담기간

행위자는 피해자1(아내)과 결혼한지 22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피해자2, 23세 / 피해자3, 20세)가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2가 고3 때 자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집에 돌아온 후 갈등이 많았다. 행위자는 2021년 7월 사건당일 피해자2가 인사를 하지 않은 일로 시비하다 양 주먹으로 피해자2의 머리와 목 부위를 2~3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1과 피해자3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2 소유의 휴대전화를 현관문

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이러한 폭행을 하여 행위자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화해하였으며, 피해자2는 2021년 12월에 다시 군에 입대한 후 군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자신의 음주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음주문제 관련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결정받았기에 상담계획에 음주문제 상담을 포함하였다. 행위자는 계획한 상담일정대로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대화법을 점진한 결과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폭력대화를 하지는 않았으나 무뚝뚝한 말투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따뜻하고 친절할 말투를 사용하기로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음주하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집안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던 것들을 지적하게 되어 피해자1과 갈등이 생기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음주 후 피해자1에게 지적받지 않기를 정하고 노력하였다. 또, 피해자1, 2가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훈육한 것이 폭력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1과의 관계 만족도를 사건 당시와 상담 종결시 모두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보완점으로 존중대화 많이 하기를 정하였다. 피해자2와의 관계 만족도는 사건 당시에는 10점 만점에 6점이었지만, 상담 종결시에는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마음 내려놓기와 대화법 등을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갈등 순간을 잘 극복해가기로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9회 등 총 15회

상담기간

2022. 4. 15. ~ 2022. 10. 28.

상담기간

부부는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4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8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건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하였으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함께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공감장애를 갈등요인으로 꼽고 그 점이 개선되기 바랐다. 행위자는 부부 모두 우유부단하면서도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점을 갈등요인으로 꼽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사를 돕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폭력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막말, 폭언하지 않기를, 피해자는 욕아로 힘들 때 그 마음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으며, 부부 모두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부는 각 원가족의 문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는데, 행위자는 아버지와의 교류가 거의 없이 자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고, 피해자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점을 상호 이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가사 및 자녀 양육 참여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행위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고, 행위자는 피해

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밑마음을 전달하는 등 부부는 서로를 이해해가며 노력하였다.

종결상담시, 상담이 도움을 준 점에 대하여 행위자는 자신이 많이 차분해졌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점을, 피해자는 상담을 오는 자체가 좋았는데 아이를 동행하지 않고 부부만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아이 눈높이에서 대화 노력을 할 것이며,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3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3/6	12명	체계적 문제해결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3/13	11명	부부관계 탐색	
		3/20	10명	의사소통 기술	
		3/27	12명	임파워먼트와 미래계획 세우기	
	음주문제 집단상담	3/7	1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14	1명	음주와 공동의존	
		3/28	1명	음주와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3/5	6명	관계의 정석, 줘야 받는다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3/12	6명	관계의 정석, 기다리기	
		3/19	7명	관계의 정석, 나누기	
		3/26	7명	관계의 정석, 지금도 괜찮아	
	동지교실	3/12	52명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음주문제 집단상담	3/7	13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14	12명	음주와 트라우마	
		3/21	16명	음주와 공동의존	
		3/28	13명	음주와 회복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③

● 양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파양할 수 있다

Q 문 52 |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입양되었는데, 양부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저에게 자주 폭언과 구타를 하였고, 제가 성인이 된 요즘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더 이상 양자로 있고 싶지 않는데 양부는 절대 파양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양할 수 없나요?

A 양부모와 파양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1호). 양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파양하는 경우라면 양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 제806조).

● 재판상 파양도 파양신고를 해야 한다

Q 문 53 | 가정법원에서 받은 파양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다시 파양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재판상 파양도 파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 이 경우 협의파양과 달리 신고한 때로부터 파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파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의 요건 및 절차

Q 문 54 |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투자했는데, 자꾸 손실을 보게 되니 이를 메꾸고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신용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득만으로는 과도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극심한 채무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장이 압류되면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봐도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와 일용근로를 하며 채무변제에 애썼지만 갈수록 일이 줄어들어 월평균 1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까지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이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불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행위였는지 아니면 무리한 투기성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나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에 실패한 이후 과도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므로 투기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면책 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만 결정받고 면책에 대한 결정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귀하는 채무를 그대로 짊어진 채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만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개인파산·면책 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후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규선 상담위원

〈ラスト 마일〉

감독 쓰카하라 아유코

출연 미쓰시마 히카리, 오카다 마사키, 아베 사다오, 던 후지오카, 이시하라 사토미, 아야노 고, 호시노 겐



유통업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11월 말의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밤, 글로벌 쇼핑 사이트 데일리 패스트(Daily Fast) 재팬에서 배송된 택배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물류센터의 새로운 센터장 후나도 엘레나(미쓰시마 히카리)는 팀 매니저 나시모도 고우(오카다 마사키)와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경시청 수사1팀은 데일리 패스트를 옥죄어온다. 데일리 패스트는 주거래처 택배회사인 양익스프레스를 압박하고, 그 과부하는 쏟아지는 반송과 수령거부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영화 〈ラスト 마일〉은 부자연스러운 사인(死因)의 진실을 밝히는 법의학 부검의들의 이야기 〈언내추럴〉과 사건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기동수사대의 24시간을 그리는 드라마 〈MIU404〉와 같은 세계관/시공간을 공유한다. 최대의 쇼핑 축제에 맞물려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본가 노기 아키코의 전작 〈언내추럴〉과

〈MIU404〉의 인물들이 잠깐씩 등장해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ラスト 마일〉의 핵심은 데일리 패스트를 겨냥한 택배 폭발물 테러가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수수께끼를 추적하는데 있고, 결과적으로 물류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특히 소비자/주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지막 구간인 ‘ラスト 마일’을 담당하는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을 집중조명한다. 이 만큼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참을성 없는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노기 아키코의 응답은 언제나 보는 이들이 깊게 자기동일시하고 이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공들여 구축하는 쪽에 있었다. 즉 무겁고 차가운 주제를 전달하는 이야기의 일부를 따뜻한 선의와 희망과 유머로 ‘보수 공사’하는 것이 노기 아키코의 장기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연민과 안타까움을 담당하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폭발 테러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는 어떤 인물, 직장과 가족 모두에게 응당 받아 마땅한 배려가 전부 박탈된 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노력했던 인물의 과거사이며, 또 하나는 택배 기사인 사노 부자다. 얼마 전까지 세탁기 제조사에서 근무했던 아들은 저가 세탁기 공세에 밀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아버지와 함께 택배 트럭을 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불통한 아들에게 택배 배달이야말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훈계하지만, 과거의 일본을 떠받치던 그같은 소박한 직업윤리는 이미 제조업 경쟁에서 아픔을 경험한 중년 아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배송 건당 지불되는 배달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던 예전 동

로 얘기를 걸핏하면 꺼내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배달 트럭 안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다가 죽지 않았냐며 반발한다.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지식과 전문성을 키워왔지만 그 필드에서 튕겨져 나오는 순간 재출발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조그맣고 낡은 트럭 안에 늙은 아버지와 늙어가는 아들이 나란히 앉아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애쓴다. 데일리 패스트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배달 기사들에게까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전까지.

동시대의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의제를 대중영화 문법으로 다루는 건 정말 어렵다. 해피엔딩이라면 온건한 판타지라고 비웃음 당하고, 새드엔딩이라면 안그래도 팍팍한 삶을 왜 이렇게 적나라한 리얼리즘으로 되풀이하느냐며 외면받는다. 그 사이에서 <라스트 마일>은 최선을 다해 까다로운 외줄타기에 성공한다. 일터가 자신의 ‘첫번째 집’이 되다시피 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수건돌리기 게임처럼 ‘폭탄’을 다음 사람 손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묵묵히 나아가고자 한다. 가혹한 생존을 잇기 위해 지친 심신을 계속 혹사해야 하는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은 그래도 앞으로 주먹밥을 먹는 점심 시간을 10분이라도 늘리고자 애쓸 것이다. 영화 초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던 달콤한 유혹의 문구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는 영화 말미에 이르면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통렬하게 돌아오고야 만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영어상담을 해주신

오영미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강민서, 강민지, 강영진, 강재연, 고아름, 권예지, 권윤아, 김다현, 김도윤, 김민서, 김민지, 김서연, 김세림, 김세준, 김세중, 김세진, 김소영, 김수진, 김시현, 김연지, 김주하, 김주현, 김지민, 김지원, 나윤우, 남성숙, 노현지, 류제빈, 문정현, 박지수, 배은솔, 배지연, 서예정, 서현진, 손재원, 송민성, 송수민,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승완, 양은진, 윤상철, 윤석빈, 이다경, 이다현, 이도연, 이도현, 이미경, 이서연, 이아정, 이윤미, 이윤섭, 이정인, 이주홍, 이채린, 이홍익, 임성완, 장주원, 장진혁, 정가영, 정민주, 정준희, 최민제, 최예은, 최하늘, 한소원, 한수희, 허진, 황보선우, 남궁지윤, 황예원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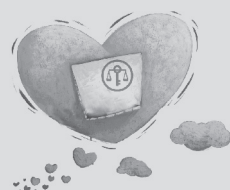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박효원, 고현희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김선숙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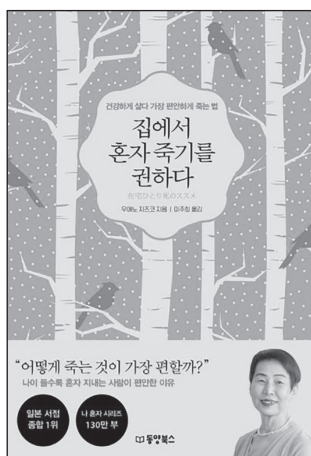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건강하게 살다 가장 편안하게 죽는 법

우에노 지즈코 지음
이주희 옮김

동양북스, 2024(1판 4쇄)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전의 일이다. 아버지 엄마 동시에 입원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먼저 퇴원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돌봄이 필요했지만 대책이 없었다. 아버지 퇴원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퇴근해 저녁마다 집 근처에서 보았던 많은 요양시설의 목록을 작성하고 전화를 걸고 찾아가 보았다. 자식이 셋이고 동네에 요양원이며 요양병원이며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며칠 있을 곳은 없었다. 모두 만실이어서 예약을 해두어야 하거나 여성 전용이거나 특정 환자 전용이거나 그랬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처절하게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동네에 어린이집이 노인 대상 시설로 바뀌고 아침마다 유치원 버스 대신 데이케어센터 자동차들이 아파트 현관에 대기하는 세상이다.

다행히 바로 집 근처 요양원에서 예약한 사람이 일주일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며 받아준 덕분에 며칠 동안 아버지를 그곳에 모실 수 있었다. 그 며칠도 썩 내켜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결국은 요양 병원에 가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지금은 엄마 혼자 독거노인으로 지낸다. 엄마는 평생 지금이 가장 평온하다며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다. 그 평온을 이해하며 그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노인의, 아니 많은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 우에노 지즈코의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를 흥미롭게 읽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곧 닥칠 일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며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를 육아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 책 또한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가장 먼저 저자는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현실에 대해 “살아 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상식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불쌍하다’에서 ‘편해 보인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 지수가 수직상승 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저자는 또한 1인 가구의 행복지수(생활 만족도)가 2인 가구의 그것보다 훨씬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2인 가구가 높으며, 노후의 행복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등을 각종 통계 자료와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증명해 보인다. 결론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꼭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간병 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한다.

물론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이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 등이 아직은 허점이 많고 보완 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생로병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니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볼 일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무수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소감을 싣는다.

이 유 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지원할 때, 정말 법률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학교의 정형화된 수업 과정과 사례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 법리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주동안의 실무수습은 사안을 단편적으로 바라본 채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가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었고, 특히 “가족관계”라는 관계의 특성이 다양한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다양한 사건 기록들과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들을 처리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을 직접 읽어보고, 소장, 법률구조의뢰서, 상담참관 보고서 등을 작성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문서를 읽으면서 각 입증자료에서 어떠한 정보를 도출해야 하는지, 진술서의 상황 설명 중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질문함으로써 가사 사건의 해결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직접 소장 및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해보고, 상담참관보고서를 통해 사안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배운 부분들을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 상담위원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 작성한 글을 자세히 첨삭해주셔서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참관을 통해서도 내담자 및 의뢰인과 소통하는 방

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담참관을 하면서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내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해내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공동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다른 관계에 비해서 적용되는 특례도 많을 뿐 아니라 그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간절함과 조급함도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상담참관을 하면서 역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내담자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진술서를 작성해 오거나 자신의 사안을 설명할 때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이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결기준을 기준으로, 혹은 내담자의 말의 논리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며 진술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변호사로서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오니모임 등을 참관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참관하며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의 집단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생들을 따뜻하게 챙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소 2025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2월 정기 전기이사회에서 유임이 의결된 광배희 소장에 대해 인준이 이루어졌다. 이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기 전기이사회에서 유임을 의결한 데 이어 인준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사진 2면)

“궁금해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긴다”

본소 교육부, 등지고실 진행

지난 3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등지고실’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을 주제로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대표가 진행했다.

강사는 현대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신뢰가 부족해지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섭섭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타인에 대한 ‘궁금해하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단절 사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할수록 섭섭함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3 법칙’을 소개하며, 하나의 질문에 대해 세 번 더 질문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1:3 법칙’을 직접 실행해 보며 관심과 공감 이 섭섭함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궁금해하는 태도’가 중요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더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 등지교실 강좌는 4월 9일,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를 주제로 본소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장 상담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5일과 12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사건을 조정하였다. 3월 18일 법무부 감사회의, 21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13일, 20일, 27일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4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 참여한 법관 대상으로 “가정폭력사건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오프라인, 원격 연수 병행). 27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모임에 참석하였다.

2025년 3월 상담통계

총 건수 4,724			
법률상담 (3,869)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1,204	2,516	148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713	33	109	

• 인터넷 정보 이용 69,42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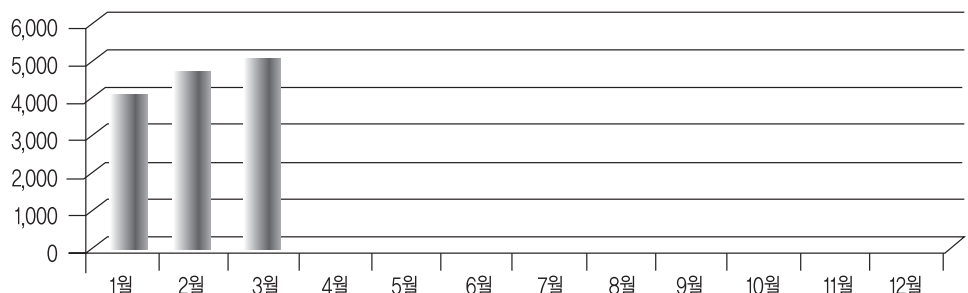
2025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2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69건(81.9%), 화해조정 713건(15.1%), 소장 등 서류작성 33건(0.7%), 소송구조 109건(2.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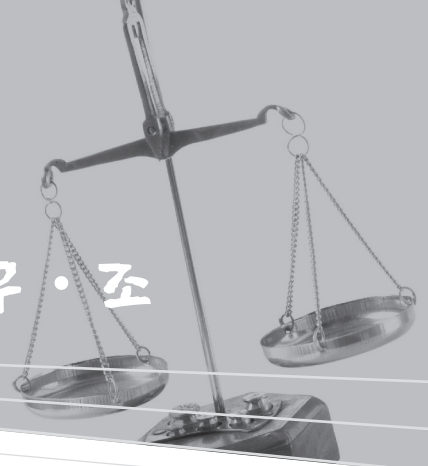
법률상담 3,86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2월에 비해 남녀관계(0.1%→0.2%), 부부갈등(3.5%→4.0%), 이혼(27.3%→27.9%), 사실혼 해소(0.6%→0.8%), 위자료·재산분할(5.5%→5.9%), 양육비(7.3%→8.3%), 면접교섭권(0.9%→1.5%), 친생부인

(0.6%→0.7%), 파혼(0.2→0.3%), 이혼무효·취소(0.0%→0.1%), 유언·상속(8.3%→8.5%), 가족관계등록부(2.4%→2.8%), 가사절차(3.1%→4.1%), 채권·채무(0.4%→0.7%), 개인회생(0.2%→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6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4건(31.1%), 전화상담 2,516건(65.0%), 인터넷상담 148건(3.8%), 서신상담 1건(0.0%)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외도를 반복하다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351

담당 : 김동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7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남, 여, 각 10대)을 두고 있다. 피고는 외국 국적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 몇 개월 후 피고는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에 다니며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외도는 둘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으나 피고는 2019년 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2.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3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6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0대)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하였을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멈추

지 않았고, 출산 후에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특히 2024년경 피고는 원고와 고향 방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를 내며 손과 효자손을 이용하여 원고의 머리와 옆구리,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사건본인은 비밀 전학을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3.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1회, 매월 둘째 토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당일 면접)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4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9일(2박 3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4월 9일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5월 7일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